[주거복지]

기존주택전세(매입)/임대지원

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LH공사 또는 SH공사에서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

○ 지원자급

국민주택기금

○ 입주대상

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(각 자치구)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

- ⊙ 1순위:
- > 생계·의료 수급자
- 한부모가족
- >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
- ▶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30% 이상
- 2순위:
- 1)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
- ▶ 2)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자

○ 임대조건

- 전세금 : 최대 13,000만원 지원
- ▶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부담 ※호당 지원한도액의 250% 이내인 주택에 한함
- 입주자부담 보증금 :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%
- ❷ 월임대료
- ▶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~2%이자

이 임대기간

- ♪ 최초 임대기간(2년)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(최장 30년 거주)
- 단,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

○ 신청장소

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(동사무소)

🗅 자료 관리부서	사회복지과 🥸	전화번호 02-2199-7125		
⊘ 이 페이지에서 제공	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	정도 만족하셨습니까?		
◎ 매우 만족	○ ♡ 만족	○ 일 보통	◎ 불만	◎ 매우 불만
의견을 입력해주세요				의견등록
200자 이내로 입력하여	주시길 바랍니다. 만족도 2	E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	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단	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.

△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양 전화번호 02-2199-7125